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동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08일

발 의 자 : 이동현, 신원철, 정지권, 김기대
김달호, 이경선, 임만균, 이광호
채유미, 신정호, 전석기, 김경영
최 선, 문장길, 이준형, 조상호
이승미, 송아량, 정진술, 김용석 의원
(20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적용대상을 규정하여 시장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 노동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2. “필수노동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필수업종”이란 재난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.
4. “대면업무”란 지역사회에서 의료, 돌봄, 복지, 안전, 물류, 운송업, 환경미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재난상황 및 특성, 공동체 유지,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

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 (필수노동자 지원 계획수립 등) 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분야별 시책,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
3.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
4.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, 근무환경,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 사업 등)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2.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
3.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

4.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

2.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
3. 필수노동자 위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

2.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

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(실태조사), 제7조(지원사업 등), 제9조(위원회 구성)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[제6조(실태조사), 제9조(위원회 구성)]

1) 추계결과 ≙ 415,00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83,00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1~2025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실태조사는 3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
 -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는 10명(담당국장 1명, 시의원 1명, 민간위원 8명)으로 구성하고 연 2회(정기 1회, 임시 1회)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

2)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415,000천원
 - 총비용 = 실태조사 + 위원회 운영비용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2021	2022	2023	2024	2025	계
세입	-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실태조사 (제6조)		200,000	-	-	200,000	-	400,000
	위원회 운영비용 (제9조)	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	15,000
	소계(b)		203,000	3,000	3,000	203,000	3,000	415,000
□ 총 비용(b-a)			203,000	3,000	3,000	203,000	3,000	415,000

- 실태조사 : 연간 비용 200,000천원×2회(2021, 2024년)=400,000천원
 - ※ 연간 비용 :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‘프리랜서 종합지원 실태조사’ 예산 200,000천원 적용하여 추계
- 위원회 운영비용 : 참석수당 12,000천원+업무추진경비 3,000천원=15,000천원
 - 참석수당 : 수당단가 150천원×8명×연 2회×5년=12,000천원
 - ※ 참석수당 단가 : 「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 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에 따라 2시간 초과 150천원 적용
 - ※ 지급인원 : 위원 10명 중 시의원(1명) 및 담당국장(1명)은 제외
 - 업무추진경비 : 경비단가 30천원×10명×연 2회×5년=3,000천원
 - ※ 업무추진경비 단가 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

나. 기술적 추계 곤란[제7조(지원사업 등)]

- 안 제7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은 서울시 소재 필수노동자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, 재난상황 발생 빈도 및 기간의 불규칙성, 재난상황별 지원 업종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남승우
조사분석팀장	여차민
예산분석관	박주용

☎ 02-2180-7943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